##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32 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정동만·송언석·엄태영

최수진 • 정연욱 • 진종오

김형동 · 김선교 · 박형수

김태호 · 김종양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('22.7.11.)하였으나,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 편이 존재함에 따라,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.

### 주요내용

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(안 제27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"발급·재발급(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)"을 "발급·재발급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2(중증장애인에 대한 주	제27조의2(중증장애인에 대한 주
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	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
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	
적・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	
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	
(이하 이 조에서 "중증장애인"	
이라 한다)으로서 본인이 직접	
주민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을	
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	
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, 그	
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	
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	
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	
여 주민등록증을 <u>발급·재발급</u>	<u>발급·재발급</u> -
(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	
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	
<u>한다)</u> 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